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 CUOMO 주지사, 뉴욕주 대법원 항소부 인사 발표

### 인사 임명은 대법원 항소부 제1부의 공석을 채울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대법원(Supreme Court) 항소부(Appellate Division), 제1부(First Department) 공석을 채우기 위해 4명을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선정된 판사들은 뉴욕의 사법 제도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성, 재능 및 경험을 반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판사는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뉴욕 대법원 항소부에서 봉사할 자격을 갖춘 모범적인 봉사 정신을 가진 네 명의 개인을 임명하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맨해튼과 브롱크스의 뉴욕 주민들을 위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 항소부-제1부 임명자:

주지사는 항소부 제1부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대법관 Saliann Scarpulla, Manuel Jacobo Mendez Olivero, Martin Shulman 및 Tanya R. Kennedy를 임명했습니다. 제1부는 맨해튼과 브롱크스를 담당합니다.

#### Saliann Scarpulla 판사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Scarpulla 판사는 뉴욕 카운티 대법원 Alvin F. Klein 대법관의 서기로 근무했습니다. 서기 직무가 끝나고 Scarpulla 판사는 Proskauer Rose Goetz 앤 Mendelsohn에 소송 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Scarpulla 판사는 후에 연방 예금 보험 회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의 수석 고문으로 이동했습니다. Scarpulla 판사는 연방 예금 보험 회사에서 허드슨 유나이티드 은행(Hudson United Bank)의 전무 겸 은행 고문(Bank Counsel)이 되었습니다. Scarpulla 판사는 Eileen Bransten 판사의 주요 국선 변호사로 뉴욕주 법원 시스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후 2001년에 뉴욕시 민사 법원에 선출되어 2009년에 뉴욕주 대법원에 임명되었고 2012년에 대법원에 선출되었습니다. 2014년 2월부터 Scarpulla 판사는 뉴욕 카운티 상업 부문의 대법원에 근무해 왔습니다. 2019년에 Scarpulla 판사는 뉴욕주 대법원에서 보류 중인 모든 국제 상업 중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Scarpulla 판사는 여러 뉴욕시와 주 전체 변호사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협회의 비즈니스

법원 대표입니다. Scarpulla 판사는 브루클린 법학대학원에서 우등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Manuel Jacobo Mendez Olivero 판사

Mendez 판사는 2012년 선출 후부터 뉴욕주 대법관이었으며 2018년부터 뉴욕시 석면 소송(New York City Asbestos Litigation, NYCAL)의 조정 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출 전에, Mendez 판사는 2003년에 뉴욕 카운티 민사 법원의 판사로 선출되었으며 2004년부터 2010년 1월까지 민사 법원의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브롱크스 형사 법원(Bronx Criminal Court)의 지정에 의해 2008년부터 2010년 1월까지 근무했으며 브롱크스 카운티 대법원의 공보판사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그리고 2012년 대법원 선출까지 뉴욕 카운티에 재직했습니다. 민사 법원 선출 전, Mendez 판사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개인 실무자(Manuel J. Mendez, P.C. 법률 사무소)로 일반 변호사 업무에 종사했으며 1993년부터 1998년까지 Kwasink & Mendez, P.C. 회사의 파트너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1990년 9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브롱크스의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형사범죄 변호부(Criminal Defense Division)에서 수석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Mendez 판사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센트럴 델 에스페 대학교(Universidad Central del Este)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Martin Shulman 판사

Shulman 판사는 2005년에 임기가 끝나는 2019년까지 제1 사법부(First Judicial Department)의 뉴욕 카운티 대법원에 선출되었습니다. 그 후 2019년에 뉴욕 카운티 대법원에 다시 14년 임기로 재선출되었습니다. 제1 사법부에서 그는 2018년에 수석 행정 판사 Lawrence K. Marks가 임명한 항소부(Appellate Term)의 부장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수석 행정 판사 Ann Pfau가 2009년에 Shulman 판사를 항소부의 판사로 최초 임명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그는 수석 행정 판사 Jonathan Lippman에 의해 임명된 후 공보판사로 재직했습니다. 뉴욕 카운티 대법원에서의 근무 외에도, Shulman 판사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 카운티 민사 법원의 판사였습니다. Lippman 판사는 또한 뉴욕 카운티 민사 법원의 부장 판사(Supervising Judge)로 Shulman 판사를 임명했습니다. Shulman 판사는 판사가 되기 전에 Shaw & Binder 부동산 소송 회사의 변호사였으며, 이후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Shaw & Binder 전, Shulman 판사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행정 심사국(Administrative Review Bureau) 부분부장, 감독 변호사 및 상근변호사를 포함하여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갱생부(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구 뉴욕시 조정 및 항소 위원회(Conciliation and Appeals Board))에서 수많은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Eugene L. Nardelli 판사의 국선 변호사로도 일했습니다. Shulman 판사는 Benjamin N. Cardozo 법학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Tanya R. Kennedy 판사

Kennedy 판사는 2015년 11월 선출 이후 2016년 1월부터 뉴욕 카운티 대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녀는 2005년 11월에 민사 법원에 선출된 후 형사 법원(2006년 1월~2008년 9월), 민사 법원(2008년 9월~2009년 12월), 가정 법원(2010년 1월~2010년

12월), 대법원 공보판사(2011년 1월~2012년 12월) 및 민사 법원 부장 판사(2014년 1월~2015년 12월)로 근무했습니다. 대법원 공보판사로, Kennedy 판사는 통합 후견인 및 집주인-세입자 일정을 감리하고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일 판사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민사 법원 선출 전에 Kennedy 판사는 Barry A. Cozier 판사의 수석 법률 서기로 그가 항소부 제2부 배석판사(2001년 3월~2005년 12월)와 뉴욕 카운티 상업 부문의 판사(1999년 5월~2001년 3월)로 근무하는 동안 재직했습니다. Cozier 판사의 서기로 근무하기 전에, Kennedy 판사는 뉴욕시 법무부 법무 고문 사무국(Office of the Corporation Counsel)에서 브롱크스 가정 법원 부문의 보조 법무 고문으로 재직하고(1992년 8월~1994년 8월) 브롱크스 불법 행위 부문(Tort Division)에 재직했으며(1994년 8월~1997년 8월) 그곳에서 보조 부분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Kennedy 판사는 Benjamin N. Cardozo 법학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항소부 제1부의 사법 심사 위원회(Judicial Screening Committee)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수십 명의 지원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고도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 지원자만이 주지사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도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후보자는 반드시 무결성, 독립성, 리더십, 지성, 법적 능력, 판단, 기질 및 경험을 보여야 했습니다.

주지사실에서는 대법원 항소부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심사 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후보자 심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뉴욕주 헌법(New York State Constitution) 및 사법 법령(Judiciary Law)에 따라 주지사는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선출된 사람들 중 각각의 항소부에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명은 상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